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2.2.3(금)10:00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군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 유관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고령군 평생교육진흥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평생교육진흥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령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평생교육의 활동 내용을 구체화 하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 학습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으로

-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고령군평생교육 협의회, 제3장 고령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4장 보칙으로 총 19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군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예산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 내지 안 제13조 에서는

고령군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설치와 기능, 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의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등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 내지 안 제17조 에서는

고령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과 평생학습관의 업무, 운영직원의 배치,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8조 내지 안 제19조 에서는

군수의 지도·감독권 규정과,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대하여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한 것은 적절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의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군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고,

유관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평생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
되게 제정된 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의 규정에
적합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